

「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2. 18(목) 평창군수(도시주택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4. 14(목)
- 상정일자 : 2016. 04. 27(수) 제21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도시주택과장 김찬수)

- 「교통안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-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
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, 상위법령에서
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,
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 제목“(구성 및 운영)”을“(위원회의 구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과장이 된다.
- ③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의 제목“(시행규칙)”을“(위원회의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
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준용 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